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현행 조례상에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, 공공체육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의 현실화(안 제9조제1항)

- 현재 조기·주간·야간, 하계·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오전·오후·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
- 사용시간 : 오전 08:00～12:00, 오후13:00～17:00, 야간 18:00～22:00

나. 성주군체육관 및 야구장 사용시간의 현실화(안 제10조제1항【별표 1】, 【별표 2】 야구장 사용료 비고란)

- ［별표1］ 전용료의 사용목적 중 체육이외일반사용의 조기사용 (03:00～07:00) 삭제
- 현행 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야구장 1회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개정하여 야구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

다.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규정 신설(안 제24조제3항)

-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의 근거규정 마련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,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사용시간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 선남면 야구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으나

○ 인근 주민의 피해와 과다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